



제281회(임시회) 제2차본회의
2009년 6월 19일(금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
교육사회위원회

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6. 19.
교육사회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최 광 옥 의원 외 7인

나. 발의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9년 6월 2일
- 회부일자 : 2009년 6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2009. 6. 11 제281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
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최광옥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1997.4.11. 정신보건법 제29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현재까지 존치되어 오고 있으나, 정신보건법령이 12회에 걸쳐 개정 정비됨에 따라 관계법령만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

성 운영할 수 있고,

-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5조(운영세칙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2009.3.22. 동 조항 개정으로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조례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.

Ⅲ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)

- 본 조례는 정신질환 발생 예방과 치료, 사회복지 유도로 정신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
- 근거법령인 『정신보건법』 및 동법 시행령이 여러번 정비되어 관계법령만으로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정할 수 있도록 『정신보건법 시행령』이 개정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V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. 1부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취

○ 정신보건법

제27조 (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)①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
가복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
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
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 위원회를,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
원회를, 시장·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를 각각 둔다. 다
만,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·군·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
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, 2008.3.21>

②제31조,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
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
각각 둔다.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
할 수 있다.<개정 2008.3.21>

○ 정신보건법시행령

제15조 (운영세칙)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
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,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기초정신
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·도지사와 시장·
군수·구청장이 각각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3.18>